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615
----------	-------

발의연월일 : 2025. 7. 22.

발 의 자 : 김동아 · 이인영 · 김승원
강득구 · 김준혁 · 황명선
허성무 · 이병진 · 부승찬
정춘생 · 양문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의 균형 잡힌 영양 공급과 건전한 심신 발달을 위한 핵심적인 교육 복지 정책임. 특히, 학교급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교육 당국이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심각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급식 업체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다른 업체로 교체하는 등의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학교의 장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학교급식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즉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학교급식공급업자와의 계약 해지 및 다른 학교급식공급업자로의 교체 등의 조치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운영 정지 명령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해당 학교의 장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통보하여 학교급식 운영을 재개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학교급식에 관한 조치 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학교급식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식중독 등 위생·안전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정지 명령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1. 학교급식공급업자와의 계약해지 및 다른 학교급식공급업자로의 교체
2. 학교급식 운영방식의 변경

3. 인근 학교와의 공동급식 또는 대체급식 실시

4. 그 밖에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운영정지 명령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해당 학교의 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통보하여 학교급식 운영을 재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6조의2(학교급식에 관한 조치 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학교급식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u> <u>1. 식중독 등 위생·안전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u> <u>2.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u> <u>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정지 명령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해당 학교</u>

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1. 학교급식공급업자와의 계약
해지 및 다른 학교급식공급업
자로의 교체

2. 학교급식 운영방식의 변경

3. 인근 학교와의 공동급식 또
는 대체급식 실시

4. 그 밖에 학생의 건강과 안전
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지 사유가 해
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운영정지 명령을 해
제하고 그 사실을 해당 학교의
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통보하여 학교급식 운영을 재
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른 운영정지 명령, 조치의 구체
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